

개정 언론중재법과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 분쟁의 조정·중재 방향

이 효 성

(충북중재부 위원,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 교수)

1. 도입 및 문제제기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개인은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견해와 사상을 순간적이고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획득할 수 있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만끽하게 됐다. 개인은 전자우편, 메신저,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 토론방, 리플달기 등 다양한 형태의 진화된 인터넷 채널을 이용해 기존 대중매체에서는 불가능했던 소통을 구가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인터넷의 황금기를 맞이해 많은 사람들은 자유로운 소통을 통한 민주주의 이상 실현이나 진리추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다. 비디오나 케이블, 직접위성 텔레비전과 같은 기존 신매체 등장 시 나타났던 장밋빛 약속들이 제시했던 민주주의 이상 실현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보여 졌다. 특히 인터넷의 등장은 영토를 기반으로 한 국가통제력에서 벗어난 민주적 정치공론장의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Goldsmith & Wu, 2006). 청소년이나 젊은 세대가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데, 정치적 무관심 집단으로 치부되었던 이들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 정치정보를 습득하고, 태도와 행동을 형성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역시 인터넷을 가장 표현 촉진적 매체이고 참여적인 시장으로 인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2.6.27. 선고 99헌마480 결정). 인터넷이 가지는 시간과 공간 제약의 극복, 상호작용성, 즉시성, 익명성과 같은 특성이 젊은 층의 정치적 관심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의 제도권 언론이나 매체에서 소외되었던 그룹들이 인터넷 상에서 존재감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존재감은 그동안 실제 세계에서 억압되거나 보이지 않던 그룹이나 사람들이 그들의 담론을 표현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커다란 가능성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Mitra, 2004).

한마디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은 기존 제도권 언론의 미흡한 측면을 대체하면서 하버마스가 주장한 담론의 공론장(discursive public spheres)과 민주주의 발전을 고양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인터넷의 등장에 대해 이처럼 큰 기

대가 가능했던 것은 인터넷은 하버마스(Habermas, 1989a)가 공론장 기능의 조건으로 제시한 ‘보편적 접근 가능성’, ‘어떠한 특권도 존재해서는 안 될 것’, ‘보편적 규범과 합리적 정당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매체로 간주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인터넷에 대한 낙관적 기대나 장밋빛 약속은 환상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부인하기 힘들다. 하버마스가 말한 담론의 공론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인터넷 공간은 매체적 특성으로 인한 한계점도 노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과 첨단 매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속성을 가진 세대들은 이슈에 대해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짙다. 짧은 메시지에 내용을 담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충격요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감정과 구호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이슈에 대한 합리적 토론 보다는 ‘여론몰이’가 일상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급속한 인터넷의 확산과 보급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는 물론 각종 신종 범죄의 급속한 증가로 이어져 윤리적, 법적 괴리현상을 낳기도 한다. 하지만 개인의 기본권 침해나 범죄 증가 현상에도 불구하고 가상공간에서의 무분별한 표현행위에 대해 기존 법률을 적용하는 데는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는 등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Gandy, 1994b). 따라서 학자들은 인터넷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관련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재진, 2002). 특히 가상공간에서의 정보전달의 순간성과 광범위성, 그리고 익명성으로 인한 부작용은 인터넷 기반 소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논의에 불을 지피게 됐다.

여론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그동안 언론 관련 법제도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다행히 지난 2005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인터넷 언론이 포함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 언론 사이트를 넘어 인터넷 포털이 정보나 뉴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피해가 확대돼 왔다. 중앙은 물론 지역 언론사들까지도 경쟁적으로 포털사이트와 제휴하면서 뉴스 공급채널이 양적으로 확대돼왔는데 이로 인해 포털사이트에 기사를 공급하는 언론사 자체에 의한 보도보다 포털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를 어떻게 구제해야 할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인터넷 포털 뉴스가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즉, 포털 뉴스로 인한 피해는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등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구제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포털 뉴스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

대한 요구가 비등한 시점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지난 2005년에 이어 2009년 포털 등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와 관련해 언론중재법 개정이 있었던 점은 시의적절 했다고 보여 진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오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될 새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그동안의 언론중재법 제정과 개정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있을 언론 조정·중재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 같은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우선 새 언론중재법의 근간이 되고 있는 포털의 속성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전반적인 인터넷과 인터넷 언론의 개념과 속성에 대해 논의하겠다. 이는 기존 언론매체와 여러 차원에서 크게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신문과 포털의 뉴스 서비스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다룸에 있어 기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자세나 인식이 필요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논의에 포함되었다. 이어 본고는 지난 2005년에 제정된 언론중재법과 2009년의 개정 중재법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이어서 개정 언론중재법이 시행되기까지 있었던 포털의 뉴스 서비스 행위에 대한 법제화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긍정론과 부정론 입장에서 논의를 제시하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포털뉴스에 대한 조정·중재 방향을 제시했는데, 여기에서는 중재위원회의 역할, 조정·중재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면서 결론을 도출하였다.

2. 인터넷과 인터넷 언론

1) 인터넷의 특성

인터넷을 통해 전혀 새로운 형태의 소통과 여론 결집 현상이 가능하게 된 것은 기존 전통 대중 매체에 비해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소통 매체로서 갖는 장점 혹은 특성 때문일 것이다. 우선 기존 매체는 소수의 정보제공자가 자본이나 정보를 독과점하고 중앙집권적이었다면 인터넷 기반 정보제공자는 다수이면서 분권적 형태의 권력구조를 띠고 있다. 즉 다양한 부류의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은 개인들에게 무한대의 가상의 커뮤니케이션 공동체를 형성해 대화의 장을 제공하고 사회변화를 위한 공중의 참여를 촉진하며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과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무한대의 정보저장 능력과 하이퍼 텍스트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은 일차원적이고 선형적이고 평면적인 형태의 기존 커뮤니케이션을 다차원적이고 비선형적이며 입체적이며 상호작용적인 멀티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했다. 대중매체가 산업화 시대의 산물이었고 대중화를 더욱 심화시켰다면 인터넷은 탈대중화, 개별화